



미국 퇴직연금가입자를 위한 은퇴 설계 제언¹⁾

이아름 연구원

-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와 은퇴 인구 증가로 연금 혜택이 감소하고 적립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퇴직연금 유형이 확정급여(DB: Defined-Benefit Pensions)형²⁾에서 확정기여(DC: Defined-Contribution Retirement Plans)형³⁾으로 바뀌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경제가 저성장과 저금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기업의 연금재정 부담과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 퇴직연금가입자가 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규모는 22조 7천억 달러로, DB형 적립금 비중은 34%를 기록한 반면, DC형 적립금 비중은 63%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 경제는 2000년 전후로 하여 고성장·고금리에서 저성장·저금리 국면으로 전환됨.
 - 미국 경제성장률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3.2%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8%로 1.4%p 감소함.
 - 미국 국채 금리(10년 만기)의 경우, 1990년대 10년간은 평균 6.7%를 기록한 반면, 2000년대 10년간은 2.2%p 감소한 4.5%를 기록함.
 - 고령화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DB형을 운용하는 기업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액이 증가하였으나 저성장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여력은 감소하고 저금리로 적립금액의 투자수익률은 하락하며 운용 환경이 악화됨.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교수가 '은퇴 설계의 위기(The Crisis in Retirement Planning)'라는 주제로 Harvard Business Review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함. 로버트 머튼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MIT와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MIT 재무관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2)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수익 부족분을 마련하는 제도임.

3)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제도는 401(k), 457, 403(b), IRA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401(k)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01(k)제도는 세법 401(k)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도이고, 457제도는 세법 457조에 의해 규정된 주·지방 공공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403(b)제도는 세법 403(b)에 의해 규정된 비영리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함.

■ 머튼 박사는 DC형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은퇴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생활수준 유지를 위하여 퇴직연금가입자는 은퇴 후 원하는 소득 수준을 정하고, 이에 맞게 DC형 적립금 운용방침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상의하여 정해야 함.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가입자가 동일한 나이라도 소득 수준, 공적연금 급여액 및 위험성향이 다르므로 나이 기준으로 동일한 투자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 목표를 나이 기준으로 집단화하기보다는 각각의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알맞게 개별화해야 함.

■ 또한, 목표 소득수준 설정을 위해 원하는 소득을 최소보장소득(Minimum Guaranteed Income), 소액의 유연한 소득(Conservatively Flexible Income), 희망하는 추가소득(Desired Additional Income) 등 세 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최소보장소득은 장수리스크, 금리 변동성,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임.
 -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같은 공적연금, DB형 연금 등이 이 범주에 속함.
- 소액의 유연한 소득은 최소보장소득보다 더욱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득으로 물가연동채권(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처럼 퇴직연금가입자가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
 - 이 소득은 최소보장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유동적인 자산으로 전체 금액이나 일부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연금가입자가 사망 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희망하는 추가소득은 퇴직연금가입자가 비연금 개인자산(nonpension plan personal assets)⁴⁾이 목표 수익률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소득임.

■ 현재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은 주식, 채권, 단기 금융상품, 뮤추얼 펀드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소득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산보다는 설정한 목표 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함.

(HBR 등)

4) 주택, 예금계좌, 저축성 예금 등.